

전시장 사용안내 요약

■ 아래 사항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개최 지원을 위해 송도컨벤시아 운영규정 등을 요약한 것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운영규정 및 관련법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▶ 전시장 사용 제출서류(임대개시 10일 전까지)

1. 각종 신청서류

- ① 송도컨벤시아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(행사성격에 따라 추가 요청 가능)
※ 발송된 공문 참조
- ② 제출방법 : 공문 작성하시어 『웹하드>올리기전용>행사명폴더>주최자 폴더』에 업로드(www.webhard.co.kr / ID : songdocs / PW : 1234)

2. 공연, 집회 및 단기행사 추가서류

- ① 무대 및 트러스 입·평면도(조명 및 스피커 배치도 포함), 무대구조안전검토서 제출
- ② 행사진행자료(규시트, 특수효과 세부내역 포함, 에어샷 중 종이가루 사용제한)

3. 부스장치 등 각종 공사는 송도컨벤시아 운영규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

- ① 통로는 출입구 및 비상구와 직선으로 연결, 전구간 통로 폭은 반드시 3m 이상
- ② 출입문, 소화전BOX 등의 전면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
- ③ 소화전과 비상구는 사용과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적법한 공간 확보
- ④ 철골구조 또는 복층의 장치공사는 구조안전검토의견이 포함된 구조 계산서 첨부
- ⑤ 소방법 등 관련 법규에 반하는 사항은 금지
- ⑥ 복층, 10m초과 시설물·전시품 설치 금지되므로 사전협의
- ⑦ 기존 시설물 벽면이나 이동식 파티션에서 50cm이상 이격
- ⑧ 주전원 및 각 분기회로별 차단기는 배선용 차단기와 누전차단기를 사용
- ⑨ 전시장 내 일반제한 사항
 - 전시장 내 차량의 주·정차, 음식물 반입 및 흡연 금지
 - 바닥·벽체에 천공 및 못질, 전시장 내 페인팅(뿔칠) 등 도장 금지
 - 용접기·산소절단기·전기톱·전기 대패 등 전기기기의 사용 금지
 - 벽체 및 바닥에 테이프, 본드 등 사용금지

4. 장치공사 등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반드시 송도컨벤시아 지정협력업체를 이용하되, 부득이 미등록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사전협의 및 미등록업체 사용에 대한 공문 제출 必
5. 자재는 반드시 방염처리가 된 것을 사용 ⇒ 반드시 관련법규 확인
 - 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(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)
 - [예시]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(블라인드 포함), 카펫, 두께2mm미만인 벽지류(종이벽지 제외),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,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, 암막무대막(영화 및 골프 연습장 스크린 포함),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제작된 소파·의자
 - 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6. 중량 1.5 Ton/m² 초과 또는 1ton 이상 물품 등을 반입할 경우 중량물반입신청서를 (중량물배치도, 하중분포계획서 등)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
7. 전시장 내 LPG 반입사용이 불가하며, LPG 사용이 필요한 경우 송도컨벤시아와 협의
8. 시설훼손, 화재, 안전사고, 도난, 장내·외부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비원, 진행요원 배치
9. 행사장 내외에서 카페 등의 휴게음식점은 해당구청 영업신고 득한 후 가능
10. 전화 및 인터넷은 주최자가 송도컨벤시아 내 구내통신서비스 사업자(032-210-1199)에게 직접 신청 및 비용부담 처리
11. 발생한 각종 오물 및 폐기물은 주최자(설치업체 포함)의 비용부담으로 처리
12. 행사 종료 후 사용한 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및 원상복구 조치
13. 행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(건축, 소방, 전기, 가스 등) 및 송도컨벤시아 제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적합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업체 안내 및 관리 철저

▶ 허가/신고 등 안내 ⇒ 반드시 관련법규 확인

1. 공연법에 따라 관람객 3천명 이상 예상되는 공연은 해당구청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(연수구청 문화재관광팀)
2. 화약 사용 시 관할 경찰서 안전성검사(연수경찰서 생활안전과)
3. 옥외전시장 내 텐트, 2m 초과 가설비계 등의 가설건축물, 옥외화장실 및 하수배출 (샤워장 등) 등의 관련신고(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관리과)
4. 유원시설 및 캠핑관련 허가·신고(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)
5.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및 비검사 대상 검사(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)
6. LPG 설치 시 완성검사 증명서 및 보험증(한국가스안전공사)
7. 휴게음식점(카페 등) 설치·운영 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(연수구청 위생과)
8. 행사주최자는 상기외에 추가 행정절차 이행 대상 확인 및 송도컨벤시아 통보

▶ 기 타

1. 행사 시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셔틀버스는 전시장 전면 내부도로 주차금지
2. 미관을 저해하거나, 오·훼손된 광고물 등은 즉시 새것으로 교체 철저
3. 옥외전시장 행사 시 주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행자 통행공간 확보 철저
4. 관람객 민원이 없도록 행사진행요원 및 안내원 등 서비스·친절 교육 철저
5. 비상약품 상시 비치·운용하고 사고발생 시 발생경위 및 처리결과 제출